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착오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사육업자 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안 제11조의3 신설)

- 1)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축 사육비용 증가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가축 사육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2)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가축 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

우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11조의4 신설)

- 법 제2조제1호의 가축 중 돼지와 가축전염병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과 질병으로 규정

라.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11조의5 신설)

- 1) 축사를 철거, 용도변경 또는 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 2) 폐업지원금 지급 제외 : ①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동안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축·도로개설 등 해당 가축사육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한 경우, ③타 축종으로 변경한 경우, ④타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
- 3) 폐업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대상 가축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6 신설)

- 폐업지원금은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바.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안 제11조의7 신설)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폐업지원금 지급 시행기간(안 제11조의8 신설)

- 1) (신청기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 2)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이후 1년이내에 지급

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신청 및 협의 절차 등(안 제11조의9 신설)

- 1)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마련
- 2)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을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으로 규정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3. 30. ~ 4. 6.) 결과, 관계부처 의견 반영하여 재입법예고(2020. 04. 13. ~ 4. 2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상금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 사육하거나 사육제한 명령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

제11조의3(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축 사육 비용 증가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가축 사육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아프리카돼지

열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가축 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1조의4(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 법 제48조의2제2
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이며 지급 대상
가축전염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제11조의5(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
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이 영 제11조의4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던 자(이 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한다)가 「축
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
한다.

1. 「축산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철
거한 경우

2. 축사의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기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자가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해당 가축 사육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이외의 타 축종으로 가축 사육업을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지구의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보상이 확정된 경우
5.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대상 가축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의6(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본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원 금액=연간 출하 마리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축산농가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의7(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11조의5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⑤ 폐업지원금의 신청, 조사,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폐업지원금 지급 시행기간) ①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폐업지원금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이내에 한다.

제11조의9(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의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피해 보상 요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해 보상 요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4항의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이란 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 보상 요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를 “단서, 제21조제2항”으로, “살처분”을 “살처분하거나 도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비용 및 법 제25조”를 “비용,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각·매몰”을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

4.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별표 2 제1호가목 중 “명령으로”를 “명령으로 폐업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명령으로”를 “명령으로 폐업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중 “소각하거나 매몰”을 각각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위반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2) 및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1회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 500

별표 3 제2호에 위반행위 가목의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 300 500의 600 7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0	1,000
750	1,000

별표 3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1)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사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1회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0
300

별표 3 제2호에 위반행위 사목의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의 500 300의 750 6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0	1,000
600	1,000

별표 3 제2호카목 중 “결과를”을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1회 위반란 “100”을 “300”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2회 위반란 “200”을 “600”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3회 이상 위반란 “500”을 “1,000”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하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1회 위반란 “100”을 “500”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하목

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2회 위반란 “200”을 “750”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 행위 하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3회 이상 위반란 “500”을 “1,000”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서목을 위반행위 서목으로 하며, 위반행위 저목부터 위반행위 보목까지를 각각 위반행위 저목부터 위반행위 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어목을 위반행위 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위반 행위 서목 및 위반행위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법 제17조제9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5의2 호	500	750	1,000
어.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5의3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소목부터 위반행위 호목까지를 각각 위반행위 소목부터 위반행위 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위반행위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보상금의 환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u> <u>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u> <u>3.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유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사육하거나 사육제한 명령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u>
<u><신 설></u>	<u>제11조의3(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신 설>

<신 설>

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축 사육 비용 증가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가축 사육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가축 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1조의4(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이며 지급 대상 가축전염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제11조의5(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이 영 제11조의4에 따른 폐

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 하던 자(이 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었던 자를 포함한다)가 「축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1. 「축산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철거한 경우

2. 축사의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자가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해당 가축 사

육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가축 이외의 타 축종으로 가축 사육업을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지구의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보상이 확정된 경우

5.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이영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신 설>

<신 설>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대상 가축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의6(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본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원 금액=연간 출하 마릿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축산농가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의7(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신 설>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11조의5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⑤ 폐업지원금의 신청, 조사,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폐업지원금 지급 시행기간) ① 제1항에 따른 폐업지

<신 설>

원금 지급신청은 중점방역관리 지구의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폐업지원금 지급은 중점방역 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 이내에 한다.

제11조의9(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 의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피해 보상 요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해 보상 요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4항의 영업손 실의 범위 및 대상이란 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 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

상금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 보상 요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 단서, 제21조제2항-----

----- 살처분하

거나 도태-----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 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

-----.

1. -----

----- 비용, 법 제25조제2항-----

2. -----

-----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

-----.

카뎀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illegible]

가.·나. (현행과 같음)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
원금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
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